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클래스원신종 MMF(K-5 호)

2. 주요 변경내용

-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위험 신설
-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(대량환매에 따른 최소 유동성자산비율 미충족 1 개월 유예조항 삭제)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2 월 26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0 조(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)	③일시적인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으로 제 19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자산의 운용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회된 날로부터 1 개월까지는 그 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<삭제>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2 월 26 일
-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위험 신설
- 대량환매에 따른 최소 유동성자산비율 미충족 1 개월 유예조항 삭제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나. 투자제한
<투자한도 예외>
일시적인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으로 위 투자한도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자산의 운용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회된 날로부터 1 개월까지는 그 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나. 투자제한
(삭제)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다. 기타 투자위험
<신설></td><td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다. 기타 투자위험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투자위험의 주요 내용</th></tr><tr><td>자산유동화증권 투자위험</td><td>이 투자신탁은 ABCP 등의 자산유동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자산유동화증권은 금융기관 또는 일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성 자산(기초자산)을 시장에서 판매 및 유통하기 용이한 형태로 증권화한 것으로 기초자산의 현금흐름 등으로 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. 따라서, 기초자산의 현금흐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(기초자산의 부실화, 발행회사의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0.02%임에 따라 6 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매우 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파산 또는 채무불이행 등)이 발생하는 경우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자산유동화증권은 거래량이 풍부하지 않아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0.03%임에 따라 6 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매우 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코스닥 1 등주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[주식] [운용전환일 이후]
하나 UBS 코스닥 1 등주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[채권]

2. 주요 변경내용
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운용전환일 이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2 월 26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	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
[요약정보]	**투자실적추이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채권운용 책임 : 조익환	**투자실적추이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채권운용 책임 : 허승찬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
제 2 부 집합투자기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2 월 26 일

구에 관한 사항		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운용전환일 이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 채권운용 책임 : 조익환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 채권운용 책임 : 허승찬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(1) 투자대상 ⑥집합투자증권등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(1)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) ⑥집합투자증권등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)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**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**

사항	**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	**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양도(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)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자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2 월 26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2 월 26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2.77%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3.29%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

	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PlusUp 블루칩증권자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2 월 26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	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
[요약정보]	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2 월 26 일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**가. 자집합투자기구** (1) 투자대상 (3) 기타 제한 사항 1)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-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소각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**나. 모집합투자기구** (1) 투자대상 **- 하나 UBS 태극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** 7.집합투자증권등 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**- 하나 UBS 단기**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**가. 자집합투자기구** (1)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) (3) 기타 제한 사항 1)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-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**나. 모집합투자기구** (1)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) **- 하나 UBS 태극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** 7.집합투자증권등 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

	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] 6.집합투자증권등 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	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)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**- 하나 UBS 단기 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]** 6.집합투자증권등 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)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양도(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)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관한 사항		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블루칩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2 월 26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2 월 26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	(생략)	(업데이트)

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(H)[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2 월 26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2 월 26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	(생략)	(업데이트)

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PIMCO 글로벌투자등급증권자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2 월 26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2 월 26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	(생략)	(업데이트)

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